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20120100409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2012.08.14.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2024.10.17.

홈페이지 www.du-ri.co.kr

이메일

kdr0791@naver.com

# [곽두리쪽갈비]

# 정 보 공 개 서

[곽두리쪽갈비협동조합]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 곽두리쪽갈비협동조합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 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9, 406호 (중동. 동백에이스프라자)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70-7005-2177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70-7005-2188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사업부(대표전화, 365일 가능)1600-2867

# 목 차

-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 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a href="http://franchise.ftc.go.kr">http://franchise.ftc.go.kr</a>)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u>또는</u>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 '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계약 체결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 http://franchise.ftc.go.kr/- '정보마당'-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 http://franchise.ftc.go.kr/- '법령 및 제도'- '법령자료 '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추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곽두리쪽갈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9, 406호(중동, 동백에이스프라자)				
곽두리쪽갈비	법인 설립	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호	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협동조합	2015.03.09.		2015.07.20	김순태	070 7005-		070- 7005-2188
	법인등록번호	13455	1-0007694	4 사업자등록번호		455-81-00136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김순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김순태/ 406호(중동, 동백에이스프라자)				
이사장	곽두리쪽갈 비협동조합	곽두리쪽갈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ппотп		김순태	070-7005-2177	070-7005-218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이소희/			인시 기흥구 동백 중동, 동백에이스	·	
이사	곽두리쪽갈 비협동조합	곽두리쪽갈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N 8 9 7 8		김순태	070-7005-2177	070-7005-218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최광희/			인시 기흥구 동백 중동, 동백에이스		
이사	곽두리쪽갈 비협동조합	곽두리쪽갈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可見多次品	으고면	김순태	070-7005-2177	070-7005-218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0171	이원희/ 곽두리쪽갈	곽두리쪽갈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9, 406호(중동, 동백에이스프라자)			

	비협동조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미집유소리		김순태	070-7005-2177	070-7005-218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곽은미/			인시 기흥구 동백 중동, 동백에이스	
감사	곽두리쪽갈 비협동조합	곽두리쪽갈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ппотп		김순태	070-7005-2177	070-7005-2188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 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 합병 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곽두리	곽두리쪽 갈비	2020.06.2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9, 406호(중동, 동백에이스프라자)	곽은미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곽두리쪽갈비]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곽두리 <sup>(1)</sup> 쪽갈비	(1) <sup>*</sup> 성곽(곽)안에 세상모든 사람들이 모여 두리(together) 다함께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자"				
상 호	곽두리쪽갈비 OO점					
상표(서비스표)	अध्यक्ष्य	출원번호: 41-2012-0020931 출원일자: 2012.06.20. 등록번호: 41-0267590-0000 등록일자: 2013.09.02.				
( <b>- (</b>	RIBS 電子U	출원번호: 40-2018-0028898 출원일자: 2018.03.06. 등록번호: 40-1439186-0000 등록일자: 2019.01.22.				
로 고 및 캐릭터	지역 기존 같이 문 기준 기술 비 기준 기술	COST Description of the state o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74,342	136,843	37,498	889,487	-81,375	7,526
2022년	155,522	111,456	44,065	814,651	9,529	9,566
2023년	131,394	76,856	54,537	845,008	11,448	10,271

2)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위 1)과 같습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건먼어구	ИB	2 77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김순태	이사장	2019.03.15 ~ 현재	이사장	업무총괄	

	이소희	이사	2019.04.28 ~ 현재	01 71	경영지원
	최광희	이사	2019.04.28 ~ 현재	01 74	경영지원
관련임원	이원희	이사	2019.04.28 ~ 현재	01 71	경영지원
	곽은미	감사	2019.03.15 ~ 현재	감사	내부감사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b>八</b> 克	상근	비상근	~ 11 1 ( 8 )
2023년 12월 31일	1	4	2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해당사항 없음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곽두리쪽갈비	서비스표	출원일 2012.06.20. 등록일 2013.09.02.	출원번호 : 41-2012-0020931 등록번호 : 41-0267590-0000	(주)곽두리	2023.09.02	
곽두리폭립	서비스표	출원일 2018.03.06. 등록일 2019.01.22.	출원번호 : 40-2018-0028898 등록번호 : 40-1439186-0000	(주)곽두리	2029.01.22	

- 당사의 지적 재산권중 서비스표는 ㈜곽두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소유자와 존속기 간 만료일까지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사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귀하는 계약기 간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관계기관에 등록된 당사의 특허, 상표, 서비스표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곽두리쪽갈비]를 시작한 날 : 2012년 06월 08일

(직영점 시작한 날 : 2006년 8월 16일)

# 2. [곽두리쪽갈비]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곽두리	곽두리쪽갈비	곽은미	2012년 06월 08일 ~2020년 06월 2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9, 406호(중동, 동백에이스프라자)
곽두리쪽갈비 협동조합	곽두리쪽갈비	김순태	2020년 06월 25일 ~현 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9, 406호(중동, 동백에이스프라자)

# 3. [곽두리쪽갈비] 업종

영업표지	업종		
곽두리쪽갈비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외식	돼지고기(등갈비)	

#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말 영업 중인 [곽두리쪽갈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	021.12.3	1.	2	022.12.3	1.	2023.12.31.		
N 7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9	9	_	9	9	_	11	11	_
서울	_	-	_	_	_	_	_	_	_
부산	_	_	_	_	_	_	_	_	_
대구	_	_	_	_	_	_	_	_	_
인천	_	_	_	_	_	_	_	_	_
광주	_	_	_	_	_	_	_	_	_
대전	_	-	_	_	_	_	_	_	_
울산	_	-	_	_	_	_	_	_	_
세종	_	_	_	_	_	_	_	_	_
경기	7	7	_	8	8	_	10	10	_
강원	_	_	_	_	_	_	_	_	_
충북	1	1	_	_	_	_	_	_	_
충남	_	_	_	_	_	_	_	_	_
전북	_	_	_	_	_	_	_	_	_
전남	_	_	_	_	_	_	_	_	_
경북	_	_	_	_	_	_	_	_	_

경남	1	1	_	1	1	_	1	1	_
제주	_	_	_	_	_	_	_	_	_

5. 최근 3년간 [곽두리쪽갈비]의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 수

(단위 :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0	1	2	0	0	9
2022	9	1	1	0	0	9
2023	9	2	0	0	0	11

- 6. [곽두리쪽갈비]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사항 없음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	2023년 가		·의 연간 편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평균 매출액(상 <sup>*</sup>			평균 (하한)	비고		
	√1.0. <del>11</del> .1	연간평균 매출액	<b>면적</b> 3.3m <sup>2</sup> 당	상한	면적 3.3m <sup>2</sup> 당	하한	면적 3.3m <sup>2</sup> 당			
전체	11	210,816	10,842	483,475	25,267	102,712	5,193	9곳 산정		
서울	_	해당없음	_	_	_	_	_			
부산	_	해당없음	_	_	_	_	_			
대구	-	해당없음	_	-	-	_	_			
인천	_	해당없음	_	_	_	_	_			
광주	_	해당없음	_	_	_	_	_			
대전	_	해당없음	_	_	_	_	_			
울산	_	해당없음	_	_	_	_	-			
경기	10	210,807	10,540	483,475	25,267	102,712	5,193			
강원	_	해당없음	_	_	_	_	_			
충북	-	해당없음	-	-	-	_	-			
충남	_	해당없음	_	_	_	_	-			
전북	_	해당없음	_	_	_	_	_			
전남	_	해당없음	_	_	_	_	_			
경북	_	해당없음	_	_	_	_	_			
경남	1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제주	_	해당없음	_	_	_	_	_			

☑ 1개 가맹점 연간 평균매출액

= 전체 또는 지역별 가맹점 총매출/총 영업개월 수\*12개월

☑ 가맹점 면적 1평당 연간 평균매출액

= 1개 가맹점 연간평균매출액/가맹점 1점포 평균 면적(평수)

## 8. [곽두리쪽갈비]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곽두리쪽갈비]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1개	2,426일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 없음

당사는 [곽두리쪽갈비]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곽두리쪽갈비]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7 H	수단 기간		지출 비-	용(단위: 천원, ၨ	비고	
구분	_ 구년 	기간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  <u>1</u> /
합계			-	_	_	
	소계	$2023.01 \sim 12$	-	_	_	
광고	인	터넷 등	-	-	-	
	소계	$2023.01 \sim 12$	-	_	-	
판촉		-	-	-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IBK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_	<del>-</del>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IBK기업은행	용인동백지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57	031-693-6963

###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IBK기업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 치신청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또한 [IBK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 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 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곽두리쪽갈비]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가맹금(최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물류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มอ
총계	[ 7,700 ]				
가맹비	5,5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능	을 위해 소요된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입 비로 전환)
교육비	2,2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0전에 계약 해지가능	기술전수, 친절 교 육 기 간 동 안 비용으로 소멸	교육 시작직후부터는 반환불가

2) 물류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 3,000 ]			
물류보증금	3,000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및 미수발생시 반환금지 또는 공제 후 실행	협동조합에 물류 보증금 예치와 조합가입시 출자금으로 대체도 가능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b>금액</b>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0,700			
가맹비(오픈직후(기한이후) 소멸)	5,500			
교육비(교육 시·종점까지 소멸)	2,200			
물류보증금(협동조합, 추후 반납 가능)	3,000(부가세 미포함)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b>면적</b> 3.3m <sup>2</sup> 당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31,500~ 44,600	_			49.5㎡(15평형)기준
필수설비 (오븐기/기계장비/주 방집기/의탁자)	협력업체	10,000~ 13,000	-	설치 1일 이전	설치 전 계약취소	자율구매가능
인테리어 (내외장공사)	협력업체	15,000~ 22,500	1,000~ 1,50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이후	공사 전 계약취소	<b>자율시공가능</b> (3.3 ㎡당 100만원이하로 시공 노력)
간판 및 싸인물 (간판,썬팅,돌출간판)	협력업체	3,000~ 5,000	-	설치 1일 이전	주문 후 3일 계약 취소	자율시공가능
POS/CCTV	협력업체	1,300~ 1,900	_	설치 1일 이전	설치 전 계약 취소	
초도물품 비용	곽두리쪽갈 비협동조합	2,200	_	오픈 3일 전	반환 불가	일괄구매후 해지불가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가맹점주 자율 시행시)할 경우**,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전체 인테리어 금액의 10%를**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점포개발팀 1600-2867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상권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 결정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ㆍ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질병 및 위생상의 문제가 없음을 전제 외에는 특별한 기준 없음	만20세 이상을 원칙으로 함 (근로기준법 준수)			
종업원*	질병 및 위생상의 문제가 없음을 전제 외에는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을 원칙으로 함 (근로기준법 준수)			

- \* 미성년자 채용시. 부모 동의서 등 추가서류 및 보건증 징구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한편. 가맹희망자의 귀하는 당사에 가맹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필요시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정기납입경비 (로열티)	가맹본부	매월 3.3㎡당 11,000원		소멸성	소멸성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실비	광고 시행 전 별도 통지		광고시행후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교육 실시 2일 이전	불가피하게 교육 불참 승인 시	교육실시 후	교육 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협력업체	실비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4%	지급기일의다 음날부터지급 하는날까지			월 계속기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2)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과 가맹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제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분기 1회이상	주간결제 요청시 확인가능 (거래원장 송부)
서비스관리	고객 서비스의 친절도와 매뉴얼 준수 여부	분기 1회이상	가맹점주 자율이지만 본사의 불시점검 및 감독실시
조리관리	사용 식자재, 조리 매뉴얼 준수 여부	분기 1회이상	가맹점주 자율이지만 본사의 불시점검 및 감독실시
위생관리	주방, 화장실 홀의 청결정도와 위생 매뉴얼 준수 여부	분기 1회이상	가맹점주 자율이지만 본사의 불시점검 및 감독실시

#### 3)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 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 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곽두리쪽갈비]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곽두리쪽갈비협동조합]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비및 물류보증금도 신규계약자와 동일하게 가맹본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 물류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곽두리쪽갈비]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 산·용역·설비·상품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 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곽두리쪽갈비]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것은 없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사항 없음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곽두리쪽갈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 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과 같은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지불	경제적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사항 없음							

(2) 당사가 [곽두리쪽갈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	상품·용 역	거래상대방	대가지불	경제적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사항 없음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두리(소금구이)쪽갈비			
매운(매콤) 쪽갈비			
바비큐(숯불 포함)			
치즈 쪽갈비	이쪼에 기계되 이이이		
생족구이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무뼈 생족구이			
김치 손수제비	* 다만, 추가품목이 개발되어 가맹본부와 협의승인시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추억의 도시락	가능할 수 있음		
한 주먹밥			
열바다라면			
폭탄계란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두리(소금구이)쪽갈비	34,000	공문발송 등			
매운(매콤) 쪽갈비	35,000	공문발송 등			
바비큐(숯불 포함)	35,000	공문발송 등			
치즈 쪽갈비	40,000	공문발송 등	   메뉴추가 및 레시피		
생족구이	34,000	공문발송 등	개발은 가맹점주 교육시		
무뼈 생족구이	34,000	공문발송 등	공개 및 가격결정 (임대료 등 지역별		
김치 손수제비	8,000	공문발송 등	상황에 따라 금액의		
추억의 도시락	4,000	공문발송 등	차이가 있을수 있음)		
한 주먹밥	4,000	공문발송 등			
열바다라면	5,000	공문발송 등			
폭탄계란찜	5,000	공문발송 등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영업지역 제도 유무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부

당사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영업지역 제도 운영 여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여부			
O	0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곽두리쪽갈비를 추가 설치하지 않으며, 향후에 도 돼지등갈비 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동일업종의 영업표시를 가진 가맹사업을 해당 영업지역에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변경 가능 여부	변경 사유
가맹점 간의 거리	직경(또는 반경) 1,000m	불가	당사자간 동의시

3) 영업지역을 재조정(변경)하는 경우의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 성 → 가맹점사업자에 게 서면 통지 → 가맹 점사업자 합의 → 영 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 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 곽두리쪽갈비]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 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 당사는 [곽두리쪽갈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곽두리쪽갈비]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 2 ]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 2 ]년입니다.

- \* 계약기간 만료 도래시 특별한 사항 및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 연장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 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0조 제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 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 제1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 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40조 제1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 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40조 제1항			
○ [곽두리쪽갈비]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40조 제1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40조 제1항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당사에 지급할 공급품 대금 및 기타 채무의 미지급금이 거래보증금을 초. 하는 경우	과 제41조 제1항		
○ 기업로고나 브랜드 로고를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지 않거나 변경하는 경우 당사의 상호, 당사가 사용할 것을 공지한 상호, 당사가 사용하였던 상호	│ 제41조 제1항│		

당사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	
○ 당사가 당사와 을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기업 로고 및 브랜드 로고를 변경·폐지하였을 때, 기존의 기업 로고 및 브랜드 로고를 계속해서 사용하 는 경우	
○ 위생적이고 청결한 점포를 위해 인테리어·설비의 내구연한 만료시점(4년)에, 객관적 근거에 의한 필요성 판단 시 이전이라도 점포의 노후 시설 및설비 교체 보수의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동의 없이 월간 3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한 경우	제41조 제1항
<ul><li>에뉴얼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당사 수퍼바이저의 가맹점 점 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li></ul>	제41조 제1항
○ 브랜드의 통일성과 제품의 품질을 보호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가맹점 위생과 제품 품질의 표준 기준을 엄격히 준수 할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 비밀을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 나, 당사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와 고객정보를 고객과의 계약내용 또 는 법령의 허용범위 이외로 사용하거나,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하는 경우	제41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매뉴얼에 따라 시공을 하지 않거나, 감리비를 지급 하지 않는 경우	제41조 제1항
○ 가맹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 로 당사의 영업과 동종 또는 유사영업을 행하는 경우	제41조 제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판촉활동에 동참을 거부하거나 당사와 합의한 판촉활 동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1조 제1항
<ul><li>)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해진 공통제품 외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원재료를 전용하는 경우</li></ul>	제41조 제1항
○ 고객의 컴플레인 발생시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와 협의 없이 판매가격을 정하여 고객에게 반복적인 컴플레인이 제기되는 경우	제41조 제1항
○ 기타 가맹계약 시에 협의한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41조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 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 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기	ᅨ약조문
0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41조	제2항
0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41조	제2항
0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1조	조 제2항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41조	5 제2항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 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	조 제2항
0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	5 제2항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41조	제2항
0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 리기 어려운 경우	제41조	조 제2항
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41조	제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가맹본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 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 <u>.</u>	70 01 (46)		- ~	714 4 1 1/10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 (상속 후 1개월 이내)	모든 권리의무	[앞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사전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본부 사전 승인시 가능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동일 지역 내에서] 귀하가 [곽두리쪽갈비]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일반인에게 등갈비를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곽두리쪽갈비]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มอ
매일 15:00 ~ 02:00 권장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종사자의 집단휴가 또는 영업활동이 곤란하여 가맹점을 5일 이상 정상 영업하지 못할 때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가맹계약서 제2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휴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분기 1회이상	S/V	자체점검은 주1회이상 권장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분기 1회이상	S/V	자체점검은 주1회이상 권장	
품질 관리(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분기 1회이상	S/V	자체점검은 주1회이상 권장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주)곽두리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곽두리쪽갈비]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부양	담비율	분담 절차	шп
十世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군음 열사	비고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홍보 및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 필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1009	%) 부담 가능		(전국 행사)
		전액 부담	없음		
개별 행사	יכ	l맹점사업주 부담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 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 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 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귀하가 물품대금의 연체, 계약종료 후의 의무 및 조치 위반, 영업비밀 준수의무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손해액을 당사에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당사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귀하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는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사의 파산 등의 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귀하는 당사가 가맹계약에 의한 교육의 대가를 받고도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당사에게 받은 금액의 2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그 밖에 양 당사자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 귀하가 가맹계약 상의 경업금지의무 또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각 각 일금일억원(₩100,000,000)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6. 귀하가 계약 후 개점 전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정보공 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기재한 위약금 규정에 따라 초기 가맹금에서 일정 부분을 상계처리 한 후 반환하게 됩니다.
- 7. 양 당사자 간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그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게 됩니다.
- 8.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 사용할 경우 귀하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1일당 현금 오십만원(₩ 500.000)씩 당사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 9. 그 밖에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에 의하여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0. 당사 또는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 별도로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협의결정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IBK기업은행에 가맹금(계약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 1588 - 1490, 홈페이지 :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VII. 가맹사업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류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 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 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 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 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 맹사업의 통일 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 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2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	○ 점포환경개 선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가 맹본부의 사유로 제약이 중로 (계약의 업업 등 본부 자 등 기가 명 우 막 어 이 이 어 이 어 이 어 이 어 이 어 이 어 이 어 이 어 이	

	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 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 담액을 부담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필요시 요청할수 있으나, 참여는 자율임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판촉 및 신규고객 창출, 소비자트랜드 고객관리, 위생관리, 조리관리, 회계 등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 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 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담당자가 가맹점 사업 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 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 당사
가맹점사 업자 요청 시	판촉 및 신규고객 창출, 소비자트랜드 고객관리, 위생관리, 조리관리, 회계 등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 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가맹점 부담(가 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 도 비용을 초과	문의 : 당사

	가맹점 운영 전반에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한	부분에	한	
	대한 경영지도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	함)			
		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				
		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				
		명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곽두리쪽갈비]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 V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곽두리쪽갈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영업중 인지하여야 할 사항 제품의 관리법 홀운영 및 관리 방법 창업에 대한 마인드교육(열정) 본사규정 및 방향	실습 및 점포 요리지도	가맹점 오픈전	필수 교육
특별 교육	신메뉴 개발 가격변동및 규정변경시 가맹점주 워크샵 추진	본사교육장 또는 별도 워크샵	필요시	매년 의무참여를 원칙

\* 교육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곽두리쪽갈비]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มฉ	
	, -	コエハモ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01.75	
	신규 교육	2주(소요예정임)	2,200	최초 계약시 이수	
	특별 교육	1일(소요예정임)	실비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10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_	-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고
해당 없음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มฉ
해당 없음	_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대표자(365일 가능, 1600-2867)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 원회 종합상담과(02-2023-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mangosix.c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첨1. [2021년 ~ 2023년 재무제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별첨2. [가맹금 예치 신청서]

# 가맹금 예치 신청서

※ 아래 유의사형	¦을 읽고 작	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상호(가맹?	점명)				
신청인	성명(대표	자)				
	주소(사무:	소)		전화번호		
	상호(영업:	표지)				
가맹본부	성명(대표	자)				
	 주소(사무 <u>:</u>	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 조의 5 제 1 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의 7 제 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ol> <li>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li> </ol>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 ◈ 정보공개서 제공확인

가맹본부 회사명					영업표지 (브랜드)		
제공확인	작성 예시 :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세증확인	(작성 란)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가맹희망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			서명 5	E는 (인)	전화번호		

- ※ 위의 표의 빈칸 모두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 3)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위반 사실
  - 4) 가맹사업자의 부담
  - 5)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6) 가맹점 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8)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인근 가맹점 현황표 제공 확인서

### ◈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현황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인근 가맹점현황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	] 대표	(인)
가맹희망자 : 성명		서명 또는 (인)